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24
----------	-----

2017. 6. 22. (목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이숙애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: 2017년 5월 29일

다. 회부일자: 2017년 6월 2일

라. 상정일자: 2017년 6월 9일

(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이숙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‘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’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통하여 정보화교육과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정책 실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,
- 제6조 제3항제3호에 “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가와 전문 기관 및 학술 단체 등의 업무 관계관” 을 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덕환)

- 본 개정조례안 『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』에서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·관리에 관한 심의·자문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, “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” 구성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안 제6조에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중 교육감 소속공무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, “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 및 학술 단체 등의 업무 관계관” 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,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및 교육정보화 지원과 역기능 예방 관리 사업 실현의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○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교육감”을 “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“이라 한다)”
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되, 교육감 소속
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
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 및 학술단체 등의
업무 관계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
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
유지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본계획 수립) ① <u>교육감은</u> 해마다 정보화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6조(위원회 설치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(생 략)</p> <p>④ ~ ⑥ (생 략)</p>	<p>제4조(기본계획 수립) ① <u>충청북도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위원회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위촉하되, <u>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 및 학술 단체 등의 업무 관계관</u>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▣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

제1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에 방·관리에 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자문 한다.

1. 제5조, 제6조, 제10조, 제11조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교육감 및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「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」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 한다.